

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보도 내용 (SBS, 6. 7) >

- ◆ “혼인신고 미룰걸, 기회 날렸다” ... 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
 -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최고가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3자녀 출산 필요 → 1자녀 가구는 후순위로 밀려 낙첨될 가능성
 - 신혼부부 소득요건(맞벌이)이 미혼청년에 비해 엄격하고, 부부 중 혼인 전에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혼인신고 주저

□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·자녀 수에 따라 차등배점* (1~3점)을 두어 혼인기간이 짧은 다자녀 가구 등 자산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.

* 혼인기간 : 3년 이하(3점), 3년 초과~5년 이하(2점), 5년 초과~7년 이하(1점)
자녀 수 : 3명 이상(3점), 2명(2점), 1명(1점)

○ 다만, 소득, 거주기간·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항목을 추가 운영 (총 5개, 13점 만점) 중으로, 단순히 자녀 수와 혼인기간 만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*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* '20.1~22.8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배점은 평균 5.8점(13점 만점)으로 낮은 편

□ 또한, 신혼부부 소득요건(맞벌이, 월 911만원)은 미혼 청년(469만원)과 유사한 수준* 으로, 혼인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,

* (미혼 청년 x 2인) 소득기준은 월 938만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(월 911만원)와 비슷

○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이력과 무관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정부는 「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(‘22.10.26)」에 따라,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%(26.7만호)를 혼인가구(신혼부부, 생애최초)에게 공급하는 등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광림 (044-201-4539)
	공공주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장근 (044-201-4580)